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규정번호 : 2-1-3

개 정 일 : 2018.6.1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학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대학원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

제1절 일반전형

제2조(지원자격) ① 학칙 제11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자는 각 학위과정에 지원할 자격이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박사 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6.14.)

③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소정의 어학능력시험(한국어 또는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학능력시험성적 제출을 면제한다.(신설 2011.8.4, 개정 2016.11.30, 2017.2.18, 2018.2.5)

1. 모국어가 영어인 경우
2. 영어권 국가에서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3. 국내대학(한국)에서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4. 한국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 등에서 인정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5.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지원자

④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6.11.30)

제3조(전형방법) (삭제 2018.6.14)

제4조(지원 구비서류) 일반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 학위과정(개정 2018.6.14.)

- ㉠ 입학지원서(온라인 접수)
- ㉡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격인정서 1부
- ㉢ 출신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 (삭제 2015.10.23.)
- ㉤ 연구계획서(소정양식) 1부
- ㉥ 학력조회동의서(소정양식) 1부

2. 박사학위과정(개정 2011.8.4., 2015.10.23., 2018.6.14.)

- ㉠ 입학지원서(온라인 접수)

- ㉞ 대학원 석사학위 수여(예정)증명서 1부
- ㉟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㊱ 논문 또는 저서, 역서(해당자) 1부
- ㊲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 ㊳ (삭제 2015.10.23.)
- ㊴ 연구계획서(소정양식) 1부
- ㊵ 학력조회동의서(소정양식) 1부

3.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위 1, 2호 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8.6.14.)

- 제5조(가산점) ①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지원자 중 지원학과와 학부전공이 동일하거나 복수전공, 제2전공 또는 부전공이 동일할 경우 총점의 5% 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신설 2018.6.14.)
- ②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FLEX, TOEFL 또는 TOEIC 성적우수자,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국내·외 대학(전문대학 포함) 시간강사 5년 이상의 경력자에게 총점의 5% 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개정 2018.6.14.)
- ③ 석사학위과정 지원자 중 본교 TESOL 전문교육원을 수료한 자가 TESOL학과를 지원할 경우 총점의 5% 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신설 2018.6.14.)

제6조(전형방법) 일반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의한다.(개정 2015.10.23., 2018.6.14.)

1. 서류심사는 대학 및 대학원 학업성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한다.
2. 구술시험은 전공에 대한 지식 및 적성, 학문에 대한 진지성, 연구계획 등으로 한다.
3.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은 대학원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한다.
4.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대한 평점은 해당전공학과 교수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평균한다.
5. 단, 위의 전형방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6. 대학원장은 각 전형별 업무 참여자 중 가족 및 이해 관계자가 지원할 경우 해당자를 전형 업무에서 제척, 회피, 기피하도록 서약서를 요구한다.

제7조(삭제 2015.10.23)

제8조(삭제 2015.10.23)

제9조(합격사정) 대학원운영위원회는 학위과정별 각 학과의 입학시험 응시자의 성적을 사정하고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8.4)

제10조(입학생 등록)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입학이 확정된 자는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단, 입학등록을 필한 자는 당해 학기 개강 일로부터 학생의 신분을 갖는다.

제2절 특별전형

제11조(목적) 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특별히 우수한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시행세칙 제2장 제1절에 규정한 일반전형 이외에 특별전형을 실시한다.

제12조(전형범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각 학위과정별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의 70%내외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지원자격)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시행세칙 제2장 제2조에 규정된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지원 자격자로서 학사학위과정의 총 평점 평균이 3.0(만점 4.5)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2018.6.14.)
2. 박사학위과정 : 시행세칙 제2장 제2조에 규정된 박사학위과정 지원자격자로서 석사학위과정 전 학년의 평균 평점이 3.50 이상인 자로 한다.

제14조(지원구비서류) 특별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개정 2018.6.14.)
 - ㉠ 입학지원서(온라인 접수)
 - ㉡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격인정서 1부
 - ㉢ 출신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 (삭제 2015.10.23.)
 - ㉤ (삭제 2015.10.23.)
 - ㉥ 연구계획서(소정양식) 1부
 - ㉦ 학력조회동의서(소정양식) 1부
2. 박사학위과정(개정 2011.8.4., 2015.10.23., 2018.6.14.)
 - ㉠ 입학지원서(온라인 접수)
 - ㉡ 대학원 석사학위 수여(예정)증명서 1부
 - ㉢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 논문 또는 저서, 역서(해당자) 1부
 - ㉤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 ㉥ (삭제 2015.10.23.)
 - ㉦ 연구계획서(소정양식) 1부
 - ㉧ 학력조회동의서(소정양식) 1부
3.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위 1, 2호 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8.6.14.)

제15조(전형시기) 특별전형은 매 학기 일반전형 이전에 실시한다.

제16조(전형방법)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의한다.(개정 2018.6.14.)

1. 서류심사는 대학 및 대학원 학업성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한다.
2. 구술시험은 전공에 대한 지식 및 적성, 학문에 대한 진지성, 연구계획 등으로 한다.
3.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은 대학원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한다.
4.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대한 평점은 해당전공학과 교수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평균한다.
5. 단, 위의 전형방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6. 대학원장은 각 전형별 업무 참여자 중 가족 및 이해 관계자가 지원할 경우 해당자를 전형 업무에서 제척, 회피, 기피하도록 서약서를 요구한다.

제17조(준용규정) 가산점, 합격사정, 입학생 등록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 제2장 제5조, 제9조 및 제10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재입학 및 편입학

제18조(재입학) 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는 제적 또는 자퇴한 학기로부터 1개 학기 이상 경과된 자로 한다.(개정 2018.6.14.)

제19조(재입학의 절차) ① 학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은 해당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재입학 자는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편입학) 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매 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편입학 자로 보충할 수 있다.

제21조(편입학 지원자격) 각 학위과정별 동일한 전공을 이수한 자로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	편입학기	전적대학원	
		등록학기	이수학점
석·박사	2	1학기 이상	6학점 이상
	3	2학기 이상	12학점 이상

제22조(편입학 지원 구비서류) 본 대학원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학위과정별로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개정 2018.6.14.)

㉠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

㉡ 성적증명서 1통

2. 박사학위과정

㉠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

㉡ 성적증명서 1통

㉢ 저서, 역서(해당자)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 1통

제23조(편입학 선발방법) ①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대학성적평점(20%), 석사학위과정 이수과목 성적 평점(20%), 지도교수 추천서(20%), 구술시험(40%)의 기준으로 평가한다.(개정 2018.6.14.)

② 박사학위과정 : 석사학위과정 성적 평점(20%), 박사학위과정 이수과목 성적 평점(20%), 지도교수 추천서(20%), 구술시험(40%)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대한 평점은 해당 전공학과 교수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개인별로 평가하여 이를 합산한 후 평균으로 산출한 성적으로 한다.

제24조(편입학 합격사정, 입학등록) 시행세칙 제2장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편입학 취득학점 인정) 본 대학원 편입학 자는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50% 이내에서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장 학사운영

제1절 등록

제26조(등록의 종류) 등록은 정규등록,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제27조(정규등록)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서는 최소 4학기 이상, 석·박사통합학위과정에서는 최소 6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재학 연한 내에서 수료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정규등록을 필하여야 한다.(개정 2018.6.14.)

제28조(연구등록) ① 본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소정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였으나, 논문 미제출로 인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학위취득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최대 2개학기,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최대 4개학기 동안 소정의 연구등록을 필하여야 한다.(개정 2017.5.13., 2018.6.14.)

② (삭제 2017.5.13)

③ 연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매 학기 1/4선) 내에 석사학위과정은 당해 학기 등록금의 10%,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당해 학기 등록금의 15%를 연구등록금으로 납부하되, 학위취득예정학기 이전까지 소정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일시납부를 할 수 있다. (단, 영구수료 시점이전에 논문 제출 기간을 연장한 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30%를 연구등록금으로, 등록금의 20%를 재등록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8., 2017.5.13., 2018.6.14.)

④ 입학연도별 연구등록 구분(개정 2017.5.13., 2018.6.14.)

1. 1999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연구등록

㉠ 석사학위과정은 수료 후 2년까지 연구등록금을 면제하고, 2년 이후부터 5년까지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매 학기 당해 학기 등록금의 10%를 연구등록금으로 납부한다.

㉡ 박사학위과정은 수료 후 5년까지 연구등록금을 면제하고, 5년 이후부터 10년까지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매 학기 당해 학기 등록금의 10%를 연구등록금으로 납부한다.

㉢ 연구등록생은 논문심사비를 면제한다.

2. 2000학년도~2017학년도 입학생의 연구등록

㉠ 연구등록은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적용한다.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학기 지정된 기일(매 학기 1/4선) 내에 석사학위과정은 수료후 첫 학기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10%를, 수료후 두 번째 학기부터는 20%를 연구등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당해 학기 등록금의 30%를 연구등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연구등록생은 논문심사비를 면제한다.

⑤ (삭제 2017.5.13)

제29조(등록절차) ① 정규 및 연구 등록자는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대학원 교학처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교부받아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단, 연구등록자는 연구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학원 연구생제도는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논문을 발표하기 이전에 교내외 연구사업 참여의 목적 등으로 대학원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등록금을 내고 대학원에 연구생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신설 2014.6.20)

③ 대학원연구생은 필요한 경우에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학원연구생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신설 2014.6.20)

④ 대학원연구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4.6.20)

⑤ 대학원연구생이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참여하던 연구사업이 종료 되었을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신설 2014.6.20)

제30조(등록금 감액)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 감액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3.1>

제2절 휴학, 복학 및 학사경고 (개정 2011.3.1)

제31조(휴학) 휴학은 일반휴학과 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이 있다.(개정 2013.2.1)

1. 일반휴학 : 질병, 사고, 개인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2. 입대휴학 : 입영영장 또는 교육소집을 받고 군에 입대한 경우로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 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휴학 중 군에 입대할 경우 군입대 휴학원서를 다시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출산·육아의 경우로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임신 및 출산확인서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임신·출산·육아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휴학 중 임신·출산·육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신·출산·육아 휴학원서를 다시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3.2.1)

4. 임신·출산휴학은 1자녀 당 1회에 한해 1년(2개 학기)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학은 1자녀 당 1회에 한해 2년(4개 학기)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육아휴학의 경우 양육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며, 남성도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3.2.1, 개정 2015.6.24)

5. 일반휴학기간은 각 학위과정에서 통산 5년 이내로 하며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단, 입대휴학과 임신·출산·육아휴학은 일반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13.2.1)

제32조(복학)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되면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은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3조(학사경고) 학업성적이 3.0 미만인자에 대해서는 학사경고한다.(신설 2011.3.1)

제3절 교육과정, 이수단위, 수강신청 및 성적

제34조(이수영역 및 학점)학생이 재학 중 이수하여야 할 영역 및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 공통사항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논문지도 I 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 I 및 졸업논문 학점은 석사학위과정 이수학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인문·사회 계열

ㄱ. 전공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해 최소 24학점(단, 정보·기록학과, KFLT(외국어로서의한국어번역전공)은 최소 33학점, 국제관계학과,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는 최소 30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타 전공 입학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 제출 전까지 선수과목으로 9학점 이상을 학부에서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최소 이수학점을 다르게 운영하는 학과 또는 전공은 선수과목을 면제한다. 또한, 어학, 문학 전공자의 경우 어학전공자는 이수과목 전체에서 어학분야 70%, 문학분야 30%, 문학전공자는 문학분야 70%, 어학분야 30%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6.14.)

ㄴ. (삭제 2018.6.14)

㉢ 자연과학 및 공학 계열

해당 전공분야에서 최소 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타 전공 입학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 제출 전까지 선수과목으로 최소 12학점을 학부에서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 석사학위과정 특별프로그램의 이수영역 및 학점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6.11.30)

2.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개정 2018.6.14.)

㉠ 공통사항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논문지도 I, 논문지도 II를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 및 졸업논문 학점은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이수학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인문·사회 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전공은 전공분야와 인접학문분야로 구분하여 전공분야 70%, 인접학문분야 30%로 구분하여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박사학위과정은 최소 36학점,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최소 5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특수 대학원 및 전문 대학원 출신자나 대학원의 전공과 다른 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학과주임 교수 및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정규 교과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선수과목을 석사학위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ㄱ. 인문·사회 계열의 어학, 문학 전공에 입학한 학생 중 통역번역대학원 졸업자로서 학부, 대학원 모두 영어전공인 학생은 9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ㄴ. 위 ㄱ이외의 학생은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단, 본교 또는 타 대학교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졸업자는 동일계열의 경우 최대 12학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개정 2015.6.24., 2018.6.14.)

제35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시행세칙 제3장 제34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하되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8.6.14.)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변경 및 취소는 소정 기간 내에 본인이 본교 전산망을 이용하여 직접 해야 한다.

③ 수강신청 취소는 해당 학기 소정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취소 후 신청학점이 3학점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4학기 학생은 본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 ④ 수강신청하지 않은 교과목 및 수강 취소된 교과목에 대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⑤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6조(폐강 기준) 개설 교과목의 수강 신청자가 3명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폐강한다. 단, 교육 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7조(시험) 각 과목의 성적평가는 매 학기 필답고사로 사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라 과제물 등에 의하여 사정할 수 있다. 단, 학부에서 이수하는 과목은 학부의 중간, 기말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 사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성적) 본 대학원에서 선수과목, 논문지도과목, 졸업논문과목 및 재수강 과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선수과목, 논문지도과목, 졸업논문과목은 학적부상에는 “P”(Pass)로 기재된다. 단, 선수과목의 합격 기준 점수는 “C⁰ ” 이상 취득자로 한다.(개정 2015.10.23)
2. 본인이 취득한 성적이 “C+” 이하(단, 2017 및 이전 학년도 취득 성적은 “C⁰” 이하)일 경우 동일 과목을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재수강 후 기 취득한 학점은 3/4선 이전에 학적부에서 삭제한다.(개정 2018.6.14.)

제39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9학점이내로 한다. 단, 석사학위과정의 정보·기록학과,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국제관계학과, KFLT(외국어로서의한국어번역전공)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12학점이내로 한다.(개정 2011.8.4, 2014.6.20., 2017.8.3., 2018.6.14)

② 박사학위과정에서 학업성적 및 연구 실적(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 일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또는 연구실적물)이 우수한 자는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8.6.14.)

③ 석사학위과정 특별프로그램은 정규학기 외에 계절학기를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학기당 취득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신설 2016.11.30)

제40조(타 대학원 및 인턴십 취득학점 인정) ① 타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은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기 당 교환학점은 국내 대학원은 3학점, 국외 대학원은 9학점 이내로 하고 재학기간 중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교환학점은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에서 9학점 이내로 한다. 단, 휴학기간 중 국내·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최종 학기는 타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없다.(개정 2018.6.14.)

③ 교환과목은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 중, 대학원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④ 본 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타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없다.

⑤ 재학중 국내외 인턴십 수행에 따른 인정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6.14.)

제41조(학위과정의 연계) 학칙 제34조에 의거하여 학·석사연계과정을 둔다

① 학·석사연계과정생이 학사과정에서 대학원 개설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학사과정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② 학·석사연계과정생의 수업연한은 6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4절 수료

제42조(과정별 수료학점) 각 학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 인문·사회계열 : 24학점

단, 정보·기록학과, KFLT(외국어로서의한국어번역전공)은 33학점, 국제관계학과,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는 30학점 (단, 2018 및 이전 학번 국제관계학과 입학생은 33학점) (개정 2018.6.14.)

㉡ 자연과학계열 : 24학점

㉢ 공학계열 : 24학점

㉣ 석사학위과정 특별프로그램의 수료학점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6.11.30)

2. 박사학위과정

㉠ 인문·사회계열 : 36학점

㉡ 자연과학계열 : 36학점

㉢ 공학계열 : 36학점

3.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54학점(신설 2014.2.4)

4. 수료사정은 교과목의 총 평점평균이 B⁰(3.0) 이상 이어야 한다.

제5절 외국어시험

제43조(응시원서 및 응시료) FLEX응시를 원칙으로 하며, FLEX에 개설되지 않은 외국어와 전공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응시료를 대학원 교학처에 제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첫 번째 응시에 한하여 응시료를 면제한다.

제44조(시험시기) FLEX이외의 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제45조(응시자격) 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은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1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개정 2018.6.14.)

제46조(시험과목) ① 석사학위과정 : 외국어시험은 FLEX(영어)로 한다. 단, 영어학과, 영문학과, 영어번역학과, TESOL학과는 영어를 제외한 FLEX로 하고, FLEX에 개설되지 않은 외국어는 학부에 개설된 전공 외국어 중에서 택 1 하여야 한다. 외국인 학생은 본인의 전공외국어, 자국어 및 출신국가의 공용어를 제외한 과목에 응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 (단, KFLT(외국어로서의한국어번역전공) 학생이 한국어를 선택할 경우, 박사과정과 동일한 전공한국어를 응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6.14.)

②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외국어시험은 2개 외국어로 하고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단, 외국인 학생은 제2외국어 과목 선택 시 본인의 전공외국어 및 자국어 및 출신국가의 공용어를 제외한 과목에 응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개정 2018.6.14.)

학 과		제1외국어	제2외국어
어 문 계 열 학 과	영어학과, 영문학과 영어번역학과, TESOL학과	전 공 영 어	FLEX(영어 이외 외국어) 단, FLEX에 개설되지 않은 외국어의 경우는 학부에 개설된 학과의 전공 외국어, 제2한문, 컴퓨터프로그래밍언어 중 택 1
	국어국문학과 (고전전공자 제외) 비교문학과	FLEX(영어)	
	국어국문학과 (고전전공자)	한 문	FLEX(영어)
	기타 어문계열 학과	해당 전공외국어	
기 타 학 과		FLEX(영어)	해당사항 없음

③ 본 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에서 개설한 외국어 교과목(대학원에서 인정하는 과목에 한함)을 수강하여 86점(B⁺) 이상 또는 통번역대학원과 국제지역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교과목 중 영어로 강의하는 교과목을 수강하여 86점(B⁺) 이상 취득한 자는 이를 다음 학기 외국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최종 학기, 수료자 및 학위수여 예정자는 제외(개정 2018.6.14.)

④ 외국어시험 과목 중 공통영어 과목은 소정의 TOEFL 점수 이상 취득한 경우, 이를 외국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외국어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만 유효

⑤ 외국어시험 과목 중 공통영어 또는 제2외국어 과목은 소정의 FLEX 점수 이상 취득한 경우, 이를 외국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외국어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만 유효

제47조(출제기준 및 시험기간) 출제기준 및 시험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출제기준

본 대학원이 인정하는 외국어 중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독해능력이 전공분야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를 시험하며, 인문·사회계열학과와 자연과학·공학계열학과로 구분하여 출제한다.

2. 시험시간 : 석사학위과정은 각 과목 60분으로 하고,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각 과목 100분으로 한다.(개정 2018.6.14.)

제48조(합격기준) 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판정한다. 단, 외국어시험 중 공통영어 과목을 지원하는 자 중에서 TOEFL 점수를 다음과 같이 취득한 자와 공통영어 또는 제2외국어 과목을 지원하는 자 중에서 FLEX 점수를 다음과 같이 취득한 자는 외국어시험 합격자로 인정한다.

1. 석사학위과정(개정 2018.6.14.)

㉠ 인문·사회계열 : TOEFL 550점 이상 (iBT 79점)

㉡ 자연과학, 공학계열 : TOEFL 500점 이상 (iBT 61점)

㉢ FLEX : 읽기영역 300점 이상(600점 만점)

㉣ FLEX iBT : 읽기영역 300점 이상(500점 만점)(신설 2018.6.14.)

2.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개정 2018.6.14.)

- ㉓ 인문·사회계열 : TOEFL 580점 이상 (iBT 92점)
- ㉔ 자연과학, 공학계열 : TOEFL 530점 이상 (iBT 71점)
- ㉕ FLEX : 읽기영역 320점 이상(600점 만점)
- ㉖ FLEX iBT : 읽기영역 320점 이상(500점 만점)(신설 2018.6.14.)

제49조(합격인준) 합격은 외국어시험의 결과로 결정된다.

제50조(재시험)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매 학기 재 응시할 수 있다.

제6절 종합시험

제51조(응시원서 및 응시료)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응시료를 대학원 교학처에 제출·납부하여야 한다.
단, 첫 번째 응시에 한하여 응시료를 면제한다.

제52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제53조(응시자격) ① 석사학위과정 : 3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3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개정 2018.6.14.)

제54조(시험과목) ① 석사학위과정 : 전공과목과 전공 관련 과목 중에서 학과에서 지정하는 3과목으로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전공과목과 전공 관련 과목 중에서 학과에서 지정하는 4과목으로 한다.(개정 2018.6.14.)
③ 학과별 전공 특성상 종합시험 과목 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신설 2016.1.19 개정 2017.8.3.)
④ 석·박사통합과정 입학 후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박사학위 취득 포기 이전에 합격한 종합시험 과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시험과목 수는 석사학위과정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8.6.14.)

제55조(출제기준 및 시험기간) 출제기준 및 시험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출제기준

- ㉓ 석사학위과정 :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 ㉔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전공영역과 전문적 연구방법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과 능력을 시험하되 교과과정을 참조하여 시험과목을 정한다.(개정 2018.6.14.)

2. 시험시간 : 석사학위과정은 각 과목 60분으로 하고,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각 과목 100분으로 한다.(개정 2018.6.14.)

제56조(합격기준) 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판정한다.

제57조(합격인준) 합격은 종합시험의 결과로 결정된다.

제58조(재시험) 종합시험 중 일부과목이 합격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59조(자격시험)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응시자격, 실시, 출제 및 합격 판정은 학위수여 규정 제3장(석사학위)의 제10조 및 제11조와, 제4장(박사학위)의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7절 학위수여

- 제60조(학위논문 제안 심사 평가)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논문제출 학기 전에 반드시 석사 학위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2개 학기 이상 논문 지도과목을 신청하여 학위논문 제안심사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단, 지도교수의 별도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논문제출 학기에 논문 지도과목(석사과정은 논문지도 I, 박사 과정은 논문지도 II)을 논문심사와 병행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는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학위논문 제안심사 평가서를 대학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지도 과목은 C⁰(71점/100점 만점) 이상을 합격으로 평가한다.(개정 2011.3.1., 2014.2.4., 2018.6.14)
- ② 학위논문 제안심사는 공개심사로 하며, 석사학위과정은 지도교수가 평가하고,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논문심사위원 내정자 1인이 평가한다.(개정 2018.6.14)
- ③ 학위논문 제안심사는 주임교수가 주관하되, 경우에 따라 지도교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1조(학위논문 제출자격) 각 학위과정에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

- ㉠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24~33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 ㉡ 학위수여규정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단, 석사학위과정 특별프로그램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6.11.30)
- ㉢ 최소 1개 학기 이상 동일한 논문 지도교수의 논문지도 학점(P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 ㉣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논문제출 학기에 시행세칙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한 정규 또는 연구등록을 한 자로 한다. 단, 지도교수는 학생이 부득이한 개인사유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논문 제출이 불가할 때에는 영구수료시점의 3개월 전까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논문 제출 기간을 최대 2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2.18)
- ㉤ 연구윤리교육 강좌를 수강한 후 수료증을 제출한 자(신설 2016.1.19.)
- ㉥ 논문 표절방지시스템 검사 결과물을 제출한 자(신설 2016.11.30)

2.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개정 2018.6.14.)

- ㉦ 수료에 필요한 학점(박사학위과정은 36학점,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54학점 이상)을 모두 취득한 자로 한다.
- ㉧ 학위수여규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 ㉨ 최소 2개 학기 이상 동일한 논문 지도교수의 논문지도 학점(P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 ㉩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논문제출 학기에 시행세칙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 또는 연구등록을 한 자로 한다. 단, 지도교수는 학생이 부득이한 개인사유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논문 제출이 불가할 때에는 영구수료시

점의 3개월 전까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논문 제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2.18., 2018.6.14.)

㉮ 연구윤리교육 강좌를 수강한 후 수료증을 제출한 자(신설 2016.1.19.)

㉮ 논문 표절방지시스템 검사 결과물을 제출한 자(신설 2016.11.30)

제6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 및 원고 제출) ① 학위수여규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학위논문심사를 원하는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서'와 '지도교수의 논문제출 승인서'를 지정된 기한까지 대학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6.14.)

② 위 ①항에 의거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원하는 자는 심사용 논문원고를 석사학위과정은 3부, 박사학위과정은 5부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6.14.)

제63조(학위논문 작성 언어 및 분량) ① 학위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로 작성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외국어로 작성할 때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석사학위과정 특별프로그램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6.11.30)

② 논문의 분량은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A4용지 2줄 간격 기준으로 원고 50매 내외, 한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상이어야 한다.

제64조(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갖춘 자는 매학기 3/4선까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6.14.)

제65조(학위논문 심사위원 구성)

① 석사학위과정

대학원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3인을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지도교수 포함)으로 선정한다.(개정 2017.5.13)

② 박사학위과정

대학원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지도교수 포함)을 5인으로 선정하되 학외인사(2인 이내)를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7.5.13)

제66조(학위논문 심사위원장) 대학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 중 석사학위논문에서는 주심(위원장) 1인, 박사학위논문에서는 주심(위원장) 1인, 부심(부위원장) 1인을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 하도록 한다. 주심은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67조(학위논문 심사)

① 석사학위과정(개정 2018.6.14.)

1. 논문작성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논문내용을 요약, 1회 이상의 공개발표 및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논문 공개 발표장에서는 방청자도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3. 각 심사위원은 심사요지를 소정 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개정 2018.6.14.)

1. 논문작성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논문내용을 요약, 논문 공개발표회를 통해 1회 이상 발표하여야 하며, 3회 이상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 공개 발표장에서는 방청자도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를 작성, 소정 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학위논문 심사판정) 논문제출자의 연구태도와 논문주제의 타당성, 연구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해당 학기 내에 완성 가능성을 판정한다. 논문이 부실하여 해당 학기 내에 완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논문의 제출을 1개 학기 이상 연장한다. 단, 논문 제출기한 최종 학기 심사대상자는 논문심사 판정을 연장할 수 없다.

제69조(학위논문 인쇄) 논문심사에 통과된 논문은 논문심사에서의 수정 보완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최종적으로 작성하고 20일 이내에 학위논문을 인쇄, 제본한 후 심사위원의 승인을 받아 소정 기간 내에 도서관에 제출한다.(개정 2015.10.23)

제70조(학위논문 제출) 완성된 석사학위논문 및 박사학위논문 일정 부수를 논문원본과일과 함께 소정 기간 내에 도서관에 제출한다. (개정 2015.10.23., 2018.6.14.)

제71조(학위논문 심사비) 석·박사학위 논문심사비는 소정 기간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2조(학위논문 평가방법) 석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하되, 100점 만점으로 하여 81점 이상, 박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동의로 결정하되 100점 만점으로 하여 81점 이상이어야 한다. 졸업논문 학점은 학적부에 “P”(Pass)로 기재된다.(개정 2014.2.4)

제73조(구술시험) 구술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구술시험은 논문심사와 병행하여 시행한다.
2. 논문심사에 합격되었으나 구술시험에 불합격되었을 경우 1개 학기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다. 단, 논문 제출기한 최종 학기 심사대상자는 제외한다.
3. 구술시험 평가는 본 심사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제74조(학위논문 공표) 심사에 통과된 박사학위논문은 1년 내에 학계에 공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5조(학위논문 재심사) 본 심사에서 불합격된 논문 제출자는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후,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단, 논문 제출기한 최종 학기 심사대상자는 제외한다.

제76조(학위수여 자격) 본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따른다.

제77조(학위수여)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수여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6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제78조(명예박사학위) ① 대학원장은 명예박사학위 후보자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 수여할 학위 종별을 결정한다.

② 명예박사학위 수여의결은 대학원위원회 위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 ③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명예박사학위수여 의결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 수여의결을 확정한다.
- ④ 명예박사학위는 본 대학교의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79조(학위기) 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 학위기 양식은 별지(서식 1, 1-1, 2, 2-1, 3)와 같다.(개정 2014.2.4)

제8절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생

제80조(공개강좌) 대학원에서는 일반교양 또는 연구상 전문 분야의 학문 또는 어학수강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단,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할 시 총장이 이를 정하여 실시한다.

제81조(연구과정생) ① 연구과정은 실무에 관련된 학문과 새로운 학문을 수강하여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각 학과에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 ③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과 동일하며,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 ④ 연구과정의 교육과정 및 등록금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하여 2회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연구 실적이 인정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⑤ 연구과정 수료자가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6학점 이내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82조(박사후 연구과정생) ① 박사후 연구과정은 박사학위 취득 후 우리 대학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8.2.5)

- ② 각 학과에 박사후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18.2.5)
- ③ 지원 자격은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본교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18.2.5)
- ④ 박사후 연구과정으로 본교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2.5)
- ⑤ 대학원은 박사후 연구과정으로 본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게 교내 시설 이용 및 과정 수료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8.2.5)
- ⑥ 박사후 연구과정생의 연구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하되,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2.5)
- ⑦ 박사후 연구과정에 대한 제반사항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8.2.5)

제9절 장학금 및 연구비

제83조(장학금 및 연구비)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및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시행세칙의 시행으로 종전의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은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 1) 이 시행세칙의 시행으로 폐지된 시행세칙중 이 시행세칙과 상이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시행세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는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 2) 이 시행세칙의 시행으로 폐지된 시행세칙에 따라 기 수여된 졸업증서, 학위기, 학위증 등과 기 처리된 학사행정 처리는 이 시행세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제57조 변경 시행세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1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2. ①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4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 대학원 성적 변경은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13.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5. ①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 제38조 선수과목 합격기준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16. ①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 이 변경 시행세칙 중 제61조는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17. ①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은 2017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③ (적용) 제61조 중 논문 표절방지시스템 검사 결과물 제출에 대한 내용은 2017년 8월 졸업대상부터 적용한다.
④ (적용) 제34조, 제39조, 제42조, 제61조, 제63조 중 석사학위과정 특별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18. ①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7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 제2조(지원자격)의 변경 사항은 2017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적용) 제34조(이수영역 및 학점)의 변경 사항은 2017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④ (적용) 제28조(연구등록), 제61조(학위논문 제출자격)의 변경 사항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19.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8조(연구등록)의 변경사항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단, 제4항 제2호의 변경사항은 관련 법률 개정으로 논문심사비 납부제도가 폐지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적용시기는 관련

법률 개정일 기준 차기학기로 한다.)

③ (경과조치) 제65조(학위논문 심사위원 구성)의 변경사항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20. ①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7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9조(학기당 취득학점)의 KFLT(외국어로서의한국어번역전공) 변경사항은 2017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제54조(시험과목)의 변경사항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21.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지원자격)의 변경사항은 2018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22. ①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8년 6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4조(이수영역 및 학점)의 국제관계학과 변경사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서식1)

석 제 ○○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학 석사(○○전공)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학 박사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학 박사 ○ ○ ○

학위번호 : 한국외대 ○○○○(석) ○○

M No. 000 Diploma No:HUFS0000(M)000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HEREBY CONFERS UPON

NAME (DATE OF BIRTH: Month Date, Year)

IN RECOGNITION OF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egree Title

WITH SPECIALITY IN Major

UNDER THE SEA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REPUBLIC OF KOREA
THIS Ordinal No. DAY OF Month, Year

_____(signature)_____

Name

Dean of the Graduate School

Seal

_____(signature)_____

Nam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서식2)

박 제 ○○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
학 박사(○○전공)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학 박사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학 박사 ○ ○ ○

학위번호 : 한국외대 ○○○○(박) ○○

D No. 000 Diploma No:HUFS0000(D)000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HEREBY CONFERS UPON

NAME (DATE OF BIRTH: Month Date, Year)

IN RECOGNITION OF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egree Title

WITH SPECIALITY IN Major

UNDER THE SEA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REPUBLIC OF KOREA
THIS Ordinal No. DAY OF Month, Year

_____(signature)_____

Name

Dean of the Graduate School

Seal

_____(signature)_____

Nam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서식3)

명박 제 ○○호

학 위 기

국 적 :

성 명 :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분은 (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므로, 인류 문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므로) 이에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예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 그 공적을 찬양하고자 이에 추천함.

년 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학 박사 ○ ○ ○

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학 박사 ○ ○ ○

학위번호 : 한국외대 ○○○○(명박) 제○○호